

03 안전검사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

● 대한산업안전협회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

- 대표전화 : 02-851-6452

| 지사명 | 전화번호 / 팩스번호 | 관할지역 |
|--------|---|--|
| 서울지역본부 | Tel : 02-869-7873-5 Fax : 0507-351-7012 | 서울특별시 전역 |
| 부산지역본부 | Tel : 051-804-5454 Fax : 0507-351-7021 | 부산광역시 전역 |
| 대구지역본부 | Tel : 053-710-3100 Fax : 0507-351-7028 | 대구광역시 (중구, 수성구, 동구, 북구, 군위군), 경상북도 (경산시, 영천시, 청도군) |
| 대구서부지회 | Tel : 053-359-2131 Fax : 0507-351-7029 | 대구광역시 (남구, 서구, 달서구, 달성군), 경상북도 (고령군, 성주군, 칠곡군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)) |
| 충북지역본부 | Tel : 032-363-3300 Fax : 0507-351-7033 | 인천광역시 전역 |
| 대전지역본부 | Tel : 042-628-2160-2 Fax : 0507-351-7044 | 대전광역시 전역, 충청남도(계룡시, 공주시, 논산시, 금산군),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|
| 광주지역본부 | Tel : 062-943-0156-8 Fax : 0507-351-7039 | 광주광역시 전역, 전라남도(곡성군, 구례군, 나주시, 담양군, 영광군, 장성군, 함평군, 화순군) |
| 경기지역본부 | Tel : 031-241-2206 Fax : 0507-351-7034 | 경기도 수원시, 용인시, 화성시 |
| 성남지회 | Tel : 031-777-9170 Fax : 0507-351-7014 | 경기도(광주시, 성남시, 양평군, 여주시, 이천시, 하남시) |
| 경기북부지회 | Tel : 031-876-0281 Fax : 0507-351-7016 | 경기도(고양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연천군, 의정부시, 파주시, 포천시), 강원도(철원군) |
| 경기남부지회 | Tel : 031-665-2416 Fax : 0507-351-7038 | 경기도(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) |
| 경기서부지회 | Tel : 031-382-9988 Fax : 0507-351-7036 | 경기도(과천시, 광명시, 군포시, 김포시, 부천시, 안양시, 의왕시) |
| 안산지회 | Tel : 031-402-3998 Fax : 031-402-4096 | 경기도(시흥시, 안산시) |
| 강원지회 | Tel : 033-734-6201-2 Fax : 0507-351-7018 | 강원도 전역(철원군 제외), 경기도(가평군) |
| 울산지회 | Tel : 052-267-1500 Fax : 0507-276-4595 | 울산광역시 전역 |
| 창원지회 | Tel : 055-281-3936-7 Fax : 0507-351-7023 | 경상남도(의령군, 창녕군, 창원시, 함안군) |
| 경남동부지회 | Tel : 055-387-1343 Fax : 055-387-1344 | 경상남도(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) |
| 경남서부지회 | Tel : 055-752-4030 Fax : 055-758-4030 | 경상남도(거제시, 거창군, 고성군, 남해군, 사천시, 산청군, 진주시, 통영시, 하동군, 함양군, 함창군) |
| 경북북부지회 | Tel : 054-451-1221 Fax : 054-455-4513 | 경상북도(구미시, 김천시, 문경시, 봉화군, 상주시, 안동시, 영양군, 영주시, 예천군, 의성군, 청송군, 칠곡군의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) |
| 포항지회 | Tel : 054-277-0163-5 Fax : 054-281-8650 | 경상북도(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, 포항시, 포항시 남구, 포항시 북구) |
| 전북지회 | Tel : 063-212-4022-5 Fax : 0507-351-7040 | 전라북도 전역 |
| 전남지회 | Tel : 061-722-2801 Fax : 061-722-2803 | 전라남도(강진군, 고흥군, 광양시, 목포시, 무안군, 보성군, 순천시, 신안군, 여수시, 영암군, 완도군, 장흥군, 진도군, 해남군) |
| 제주지회 | Tel : 064-753-8237-8 Fax : 0507-351-7043 | 제주도 전역 |
| 충북지회 | Tel : 043-236-0395-8 Fax : 043-236-0399 | 충청북도(괴산군, 보은군, 영동군, 옥천군, 증평군, 진천군, 청주시, 단양군, 음성군, 제천시, 충주시) |
| 충남북부지회 | Tel : 041-522-4011-3 Fax : 0507-351-7047 | 충청남도(천안시, 아산시) |
| 충남서부지회 | Tel : 041-669-1480 Fax : 0507-351-7048 | 충청남도(당진시, 보령시, 부여군, 서산시, 서천군, 예산군, 청양군, 태안군, 홍성군) |

● 한국안전기술협회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

- 대표전화 : 1577-7514

| 지사명 | 전화번호 / 팩스번호 | 관할지역 |
|--------|--|---|
| 경인지역본부 | Tel : 032-429-8504 Fax : 032-429-8506 | 인천, 부천, 김포 |
| 서울지회 | Tel : 02-894-8504 Fax : 02-894-8506 | 서울특별시 전역, 경기도(고양, 파주, 양주, 남양주, 동두천, 의정부, 구리, 포천, 연천, 가평), 강원도(춘천, 화천, 양구, 홍천, 인제, 철원) |
| 경기남부지회 | Tel : 031-268-8513 Fax : 031-268-8515 | 경기도(수원, 화성, 용인) |
| 경기서부지회 | Tel : 031-431-3139 Fax : 031-431-0223 | 경기도(안산, 시흥, 안양, 군포, 의왕, 과천, 광명) |
| 평택지회 | Tel : 031-654-8504 Fax : 031-654-8507 | 경기도(평택, 오산, 안성) |
| 경기동부지회 | Tel : 031-751-3122 Fax : 031-752-4122 | 경기도(성남, 이천, 여주, 광주, 하남, 양평), 강원도(원주, 횡성, 평창, 강릉, 고성, 동해, 삼척, 속초, 양양, 영월, 태백, 정선) |
| 대전지역본부 | Tel : 042-538-3060 Fax : 042-523-9001 | 대전광역시 전역, 세종특별자치시 전역, 충청도(논산, 공주, 계룡, 금산, 보령, 서산, 홍성, 서천, 부여, 청양, 태안) |
| 충남지회 | Tel : 041-576-6446 Fax : 041-576-6447 | 충청도(천안, 아산, 예산, 당진) |
| 충북지회 | Tel : 043-216-8504 Fax : 043-216-8505 | 충청도(청주, 진천, 보은, 증평, 영동, 괴산, 옥천, 충주, 제천, 단양, 음성) |
| 광주지역본부 | Tel : 062-971-8666 Fax : 062-971-7077 | 광주광역시 전역, 전라도(나주, 담양, 화순, 곡성, 장성, 함평, 영광, 구례) |
| 전남지회 | Tel : 061-464-6640 Fax : 061-464-8077 | 전라도(목포, 신안, 진도, 무안, 영암, 강진, 해남, 완도, 장흥) |
| 전북지회 | Tel : 063-244-3122 Fax : 063-244-4122 | 전라북도 전역 |
| 여수지회 | Tel : 061-684-8504 Fax : 061-684-8505 | 여수, 순천, 보성, 고흥, 광양 |
| 부산지역본부 | Tel : 051-362-8100 Fax : 051-365-3930 | 부산광역시 전역 |
| 울산지회 | Tel : 052-221-4090 Fax : 052-221-4092 | 울산광역시 전역 |
| 경남지회 | Tel : 055-237-4824 Fax : 055-237-4827 | 경상남도(창원, 마산, 진해, 함안, 창녕, 의령, 진주, 사천, 거창, 함양, 산청, 하동, 남해, 합천, 통영, 거제, 고성) |
| 경남동부지회 | Tel : 055-364-8181 Fax : 055-364-1661 | 경상남도(김해, 양산, 밀양) |
| 대구지역본부 | Tel : 053-588-9303 Fax : 053-588-9306 | 대구광역시 전역, 경상북도(경산, 영천, 청도, 고령, 성주, 군위, 칠곡(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 제외)) |
| 경북지회 | Tel : 054-473-8503 Fax : 054-473-8505 | 경상북도(구미, 김천, 영주, 상주, 문경, 봉화, 안동, 예천, 의성, 영양, 청송, 칠곡(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 제외)) |
| 포항지회 | Tel : 054-281-8504 Fax : 054-281-8505 | 경상북도(포항, 경주, 영덕, 울진, 울릉) |

●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

- 대표전화 : 1566-1277

| 지사명 | 전화번호 / 팩스번호 | 관할지역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서울지역본부 (서면심사 실시) | Tel : 02-801-0318 Fax : 02-801-0369 | 서울특별시, 경기도(하남시, 광명시, 안양시, 군포시, 의왕시, 가평군, 구리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연천군, 의정부시, 포천시), 강원도(춘천시, 철원군, 홍천군, 양구군, 인제군, 화천군) |
| 부산경남 지역본부 | Tel : 051-811-6520 Fax : 051-811-6505 | 부산광역시, 경상남도(양산시) |
| 울산지사 | Tel : 052-275-8775 Fax : 052-275-5710 | 울산광역시 |
| 경남동부지사 | Tel : 055-237-8860 Fax : 055-212-1081 | 경상남도(양산제외) |
| 대구경북 지역본부 (서면심사 실시) | Tel : 053-560-1234 Fax : 053-289-3229 |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|
| 경인지역본부 | Tel : 032-425-0685 Fax : 032-427-0687 | 인천광역시, 경기도(고양시, 파주시, 부천시, 시흥시, 안산시, 강화군, 김포시) |
| 경기감원 지역본부 | Tel : 031-289-3400 Fax : 031-289-3406 | 경기도(수원시, 화성시, 오산시, 과천시, 용인시, 안성시, 평택시, 성남시, 광주시, 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), 강원도(영월군, 원주시, 횡성군, 정선군, 태백시, 평창군, 강릉시, 고성군, 동해시, 삼척시, 속초시, 양양군) |
| 충청지역본부 | Tel : 042-864-3400 Fax : 042-633-0453 |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북도, 충청남도(계룡시, 공주시, 금산군, 논산시, 부여군, 서천군) |
| 천안지사 | Tel : 041-523-0454 Fax : 041-551-0455 | 충청남도(천안시, 당진시, 보령시, 서산시, 아산시, 예산군, 청양군, 태안군, 홍성군) |
| 호남지역본부 | Tel : 062-367-8305 Fax : 062-367-7509 | 광주광역시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제주도 |

● 안전보건공단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

- 대표전화 : 1544-3089

| | | |
|---|----------|--|
| 1 | 서울광역본부 |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층 Tel : 02-6711-2901-4 / Fax : 02-6711-2940 담당업무 :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, 안전검사,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: 서울특별시, 강원도(철원 제외), 경기도(가평) |
| 2 | 부산광역본부 | 주소 :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(부곡동 64-31) Tel : 051-520-0680 / Fax : 501-520-0579 담당업무 :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, 안전검사,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: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 |
| 3 | 광주광역본부 | 주소 :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 Tel : 062-949-8721-3,6 / Fax : 062-949-8768 담당업무 :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, 안전검사,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: 광주광역시, 전라남도, 전라북도 |
| 4 | 대구광역본부 | 주소 :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Tel : 053-609-0567 / Fax : 053-421-8627 담당업무 :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, 안전검사,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: 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|
| 5 | 인천광역본부 | 주소 :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-1 Tel : 032-510-0531,4 / Fax : 032-578-9202 담당업무 :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, 안전검사,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: 인천광역시, 경기도 북부(가평 제외), 강원도(철원) |
| 6 | 대전세종광역본부 | 주소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Tel : 042-620-5644-6 / Fax : 042-620-3619 담당업무 :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, 안전검사,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: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, 충청북도 |
| 7 | 경기지역본부 |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Tel : 031-259-7129(1부), 031-259-7289(2부) / Fax : 031-259-7280 담당업무 :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, 안전검사,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: 경기도 남부(수원, 용인, 화성, 평택, 오산, 안성 등) |
| 8 | 제주지역본부 | 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설로 47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Tel : 064-797-7522 / Fax : 064-797-7519 담당업무 :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, 안전검사,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: 제주특별자치도 |

2023-산업안전보건인증원-759



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꼭 받으세요!



이 안전검사



안전검사란?

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·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

※ 안전검사 대상 유해·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해·위험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

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

| 대상 | 적용범위 |
|-----|---|
| 리프트 |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.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|
| | 1) 적재하중이 0.49톤 이하인 건설작업용리프트, 0.09톤 이하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|
| | 2)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.5제곱미터 이하고, 높이가 0.6미터 이하인 리프트 |
| | 3) 자동차정비용리프트 |
| | 4)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 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|

※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) [별표1] 참조

리프트 최초 안전검사 신청 기한 및 주기

- 개정된 안전검사 대상 적용 시행일 : 2024.3.2.부터
 - 0.5톤 미만 산업용리프트의 최초 안전검사 신청기한 : 2024.3.2. ~ 2024.9.2.까지(6개월)
 - 안전검사 주기 : 최초 안전검사 후 매 2년마다
- ※ 단, 설비 설치일이 3년 미만인 산업용 리프트의 경우 최초안전검사는 설비 설치일로부터 3년 내 실시 후 매 2년마다

검사 수수료

| 안전검사 대상 | 안전검사 수수료 |
|---------|----------|
| 리프트 | 62,000원 |

※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(고용노동부고시)참조, 부가세 별도

안전검사 신청절차

안전검사 신청서 제출

I 신청인

- 안전검사 신청서 작성 후 FAX, 우편, 방문,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인 소재지 관할 검사기관 지역사무소로 제출

민원접수

I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

- 민원접수 담당부서를 통해 민원접수

검사수수료 입금

I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

- 수수료 입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(SMS)로 발송 또는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계좌번호 안내

I 신청인

- 휴대전화 문자메시지(SMS)로 발송된 가상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
- 또는 안내된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계좌번호로 입금

안전검사일 통지

I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

- 안전검사 실시일 확정 후 유선통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(SMS) 또는 팩스를 통한 예정통지서 발송 등으로 통지

안전검사 실시

I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

- 신청인이 요청한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
-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

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

I 안전검사 합격증명서, 안전검사 결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

안전검사 신청서

※ 안전검사 신청서 양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지 제50호서식] 참조

과태료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구분 | 안전검사 미실시 |
| 과태료 |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|
| 관련근거 |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|
| 행정조치 | 사용중지 명령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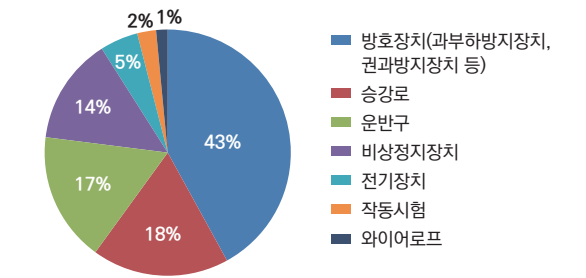
주요 검사항목 및 불합격 내용

1 주요검사항목



※ 유압식, 랙 및 피니언식 산업용 리프트 : 「안전검사 고시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23-47호) [별표 3] 참조
※ 권동식, 원치식 일반작업용 리프트 : 「안전검사 고시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16호) [별표 3] 참조

2 주요 불합격 항목



안전검사기관 현황 및 홈페이지

| | |
|------------|---|
| 대한산업안전협회 | http://www.safety.or.kr (02-851-6452) |
| 한국안전기술협회 | http://www.korsta.or.kr (1577-7514) |
| 한국승강기안전공단 | http://www.koelsa.or.kr (1566-1277) |
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| http://www.kosha.or.kr (1544-3089) |

02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



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

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·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

※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후 자율안전검사 실시 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

인정절차 및 방법

인정절차



-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 2부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
- 안전보건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
-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함

업무처리기한

-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

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에 따른 검사주기

-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

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유효기간

-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인정